



캘리포니아 보호 및 옹호 제도

www.disabilityrightsca.org

무료 전화: (800) 776-5746

TTY: (800) 719-5798

**# 1 K-12 교육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예산 삭감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서 -
2009년 8월 6일**

CAHSEE 졸업 시험

본 전단에서는 캘리포니아 예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변경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들 변경사항들은 CAHSEE 고등학교 졸업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2009-2010 학년도 학기 초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 법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CAHSEE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대상 학생들의 CAHSEE 합격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유자격 학생들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CAHSEE에 합격하지 않고서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교육 조례 제 60852.3(e) 항 목적으로 10학년에 CAHSEE에 응시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은 또한 12학년에 CAHSEE 응시를 시도해야 합니다.

"유자격 학생"은 누구입니까?

유자격 학생은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해당 학생이 2009년 7월 1일이나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장 수령을 위한 모든 주 및 지방 요구사항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IEP 또는 504 플랜 대상 학생으로 정의됩니다. 교육 조례 제 60852.3(c) 항.

해당 학생이 모든 다른 주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주 법에 의해 규정된 필수 교과학습과 이수 단위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는 유일한 요건은 CAHSEE 합격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군에서 적용될 수 있는 특정 교과학습 및 이수 단위는 요청시 교육청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얼마나 오래 유효합니까?

면제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CAHSEE의 합격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 표준에 있어서 학문적 성취의 수준을 입증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유자격 학생들을 위해 규정에 의해 대안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 또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대안적 수단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교육 조례 제 60852.3(b) 항. 현행 법에 의거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장애가 있는 유자격 학생들이 그러한 대안적인 시험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 교육위원회에서 대체 시험을 채택하려는 적절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주 교육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이 날짜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조례 제 60852.2(b) 항.